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05. 10

환경부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 31, 법률 제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등 법체계의 전반적 개편과 아울러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비점오염원관리제도 등을 시행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종류로 규정(안 제18조)

-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나. 사업자 등이 운영일지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에 측정기기 가동시간 및 측정기기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추가(안제28조제1항)

다.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의무 규정(안 제29조제2항)

-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도록 유지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상시 전송

라.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전산망에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확인이나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안 제29조제4항)

- 마. 측정기기에서 전송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설치 · 운영(안 제30조)
- 환경관리공단에 관제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사업장의 기술지원은 각 지사별로 실시
- 마.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은 고시로 규정(제 30조제2항)
-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 보고서(배출시설변경보고서) 서식과 제출시기 규정(안 제 32조)
- 측정기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제출시기
 - 개선 · 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거나 가동을 중지하기 시작한 때, 폐수를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 외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 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자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이외에 소재지 변경, 신고필증에 개재된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안 제57조제2항)
- 자.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로 규정(안 제74조)
- 수소이온농도 이외의 연속자동측정방법을 이용한 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오염물질 추가

차. 비점오염 방지시설 설치시기 · 설치기준 및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안 제48조제1, 2항)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중에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개시 2일전까지, 공사완료 후에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준공시까지 설치하도록 정함
-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자연형과 장치형시설의 특성 제시),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규정

카. 비점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 운영기준(안 제49조)

- 관리담당자 지정, 강우 전 · 후 관리사항 및 관리상황 기록
- 타.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의 승인절차 및 변경승인사항(안 제53조)
- 시 · 도지사는 관리대책을 통보받은 후 2년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받은 사항 중 개발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거나, 저감 대책사업비가 100분의 15이상 줄어드는 경우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파. 골프장의 맹 · 고독성 농약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60조)

하. 경작방법 변경 ·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고랭지의 기준을 해발고도 400m이상에 위치하는 경사도 15%이상인 경작지로 정함(안 제56조)

환경부령 제 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제5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3과 같다.

제6조(기타수질오염원)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

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기타 사업장별 오염물질배출량 할당 등 총량규제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 ②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

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호소

2. 영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②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은 별표 7과 같다.

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군용자동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와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행증을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내판의 규격 등)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

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

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
식물을 짓는 등 하천·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축전지·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
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방법 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

시하여야 한다.

②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배출허용기준)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9 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9조제5항 또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5.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 8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
되는 경우
6.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7.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9. 영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10. 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
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8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
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공정흐름
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
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제1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능 특정수질유해물질) 범 제33조 제7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1. 구리(동)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제1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 범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영 제9조제8항제3호 각목의 시설 설치 계획서
 3.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
- ② 범 제33조제2항·제34조 및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변경명세

및 중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

제20조(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영 제11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수를 말한다.

1. 방지시설중 물리적·화학적 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 이내)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사업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그 성상이 다른 폐수와 달라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 이내)으로 배출되는 폐수

3. 영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4.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5. 보일러 기타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6.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된 기간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수

제21조(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11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등 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을 지정 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특성과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2. 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폐수를 위탁처리(이하 "위탁 처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수량 및 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 계획 및 그 도면

다.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의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이하 "자가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배출시설에 사용하는 물

과 액체물질의 양 및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공정도

나. 폐수를 재이용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

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서

다.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 또는 연구

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농도·양 및 사용용도, 사용처 등에 관한 서류

라. 기타 처리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등 관련자료

제23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자의 준수사항)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24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는 이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②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 ③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변경
2.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처리방법 변경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유입사업장 수의 변경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의 변경

제25조(가동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시운전 기간 등) ①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

②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소속사업소
5.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오염도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의 위험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등의 신청서류에 이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석처리 인정신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뒷면에 희석대상 폐수의 배출시설·발생량·희석배율 및 희석량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측정기기 또는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측정기기 또는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를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일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운영일지는 별지 제9호서식(영 제11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 폐수처리업자는 별지 제111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디스켓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29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사업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사업자는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에 전송된 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확인이나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또는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및 자동 측정자료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개선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당해초과횟수를 포함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서 제출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6조제4항 각 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2조(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동조 제1항제2호가목 내지 나목의 경우에는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 작업을 시작하거나 가동을 중지하기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영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내지 마목 또는 동조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3. 영 제1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폐수를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 외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③사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

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제2항 제3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시기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하수종말처리시설) 범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4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범 제4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정도

제35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예정배출량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배출량이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직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폐수배출량의 증감예측자료(배출시설 신·증설 또는 폐쇄나 가동일수의 조정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출농도의 증감예측자료(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이나 원료변경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나.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명세서 및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36조(오염물질배출량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①시·도지사 등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제26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에 1회이상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부과기간 직전부과기간에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3. 당해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을 직전부과기간의 기준이내 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게 신고한 경우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에 따른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통보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공정도 및 수량, 폐수 재이용율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부과시 감면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20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개선완료일) 영 제2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제4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영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6조제4항 각 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2조(과징금의 부과기준등) ①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 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

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 한다.

제43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오염물질의 측정 및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4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11과와 같다.

제46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 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7조(신고서 서식)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변경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

다.

제48조(방지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개시 2일 전까지, 공사완료 후에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준공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지시설의 설치기준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49조(방지시설 관리 · 운영기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관리 · 운영”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비점오염원 관리담당자 지정
2. 전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비점오염원 관리 교육 실시
3. 비점오염 관리시설은 강우 전에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강우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우 후에는 오염물 처리, 퇴적물 준설, 여과기능 복구 등을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
4. 관리담당자는 직원교육 현황, 강우 전 · 후 방지시설 관리현황 등을 별지 31호서식에 의한 「비점오염 방지시설 관리 · 운영대장」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개선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설치하여야 할 시설, 개선하여야 할 시설 및

관리·운영기준, 시설설치 또는 개선시 고려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1조(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관련 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시 비점오염원 관리자의 책무
2. 해제 후 적정 관리방안

제52조(관리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관리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계의 일반현황
2. 주민의 참여방안
3. 관계기관별 추진사항
4. 관리목표 달성을 평가 방안
5. 재원조달방안

제53조(시행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방지시설설치 또는 기타 저감대책사업비가 100분의 15이상 감소하는 경우

제54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계의 일반현황
2. 오염원 분포현황 및 특성분석
3. 관리주체별 추진사항
4. 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5.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6. 관리목표 달성을 평가 방법

제55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 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는 법 제56조 규정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제54조제6호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기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농경지는 해발 400m 이상에 위치하는 경사도 15% 이상의 농경지로 한다.

제57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 원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오염배출물질예측서
3.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출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제출관청 및 기타수질오염원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

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과 같다.

제59조(개선명령) ①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개선계획기간이 종료한 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확인)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등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 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의 이용등)을 기재한 서류
 7.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
 8.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등을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⑤법 제62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의 변경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3. 폐수의 처리용량 및 방법의 변경

4. 사업장의 대표자의 변경

5. 폐수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변경

⑥ 폐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 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2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2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6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징금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백만원으로 하고,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는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하여는 2.0, 폐수재이용업에 대하여는 0.5로 할 것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

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2. 폐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3.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③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통지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환경기술인등의 교육)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
 - 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나.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65조(교육과정 등)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2. 환경기술인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제66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환경기술인과정 및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은 교육개시전까지 당해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8조(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자료제출협조)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1조(교육경비)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처리실태의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신고 또는 등록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정 시공 여

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처리량·재고량 등 적정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10.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68조제1항 각호의 자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
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
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
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
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
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
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제7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

검사기관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

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

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소이온농도

2.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 폐수 등의 오염물질연속자동측정

방법을 이용한 측정기기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

제75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

표 17과 같다.

②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

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76조(수수료)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1만원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5천원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 5천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보고) ①시·도지사등이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18와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18중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기간 및 이의방법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 행
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